

「평창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이창열 의원
- 제안일자 : 2025. 11. 11.
- 회부일자 : 2025. 11. 18.
- 상정일자 : 2025. 11. 25.

2. 제안이유

- 관내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군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공공심야약국 지정 절차 및 신청 방법(안 제3조)
- 예산 범위 내 지원 항목 규정(안 제4조)
- 운영시간 규정(안 제5조)

- 군수의 지도·감독, 운영 실태 및 성과 조사(안 제6조)
- 위치·운영시간 등 정보 제공 및 홍보(안 제7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약사법」 제21조의3에서 군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을 지정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¹⁾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나. 입법의 취지

-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입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 및 안전한 의약품 이용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절차를 규정함.
- 안 제4조(재정 지원)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재정적 지원 항목을 규정함.
- 안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규정함.
- 안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에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도·감독 및 운영 실태와 운영성과 조사의 근거를 규정함.
- 안 제7조(홍보 및 정보제공)에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도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원활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와 정책적 필요성은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약사법

- 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공공심야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